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남대문세무서장  
 (EM06 ☎ 02 22600407)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 귀중  
 04524

성실한 세금납부와 국세 행정에 대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기타소득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현재 70%에서 '19.1.1.지급분부터 60%로 조정됨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구 분	'18. 1월~3월	'18. 4월~12월	'19년 이후
지급액	25만원	16만 6,666원	12만 5,000원
필요경비 공제율	80%	70%	60%
기타소득금액	5만원		
소득세	0원		

\* 적용대상 : 일시적 강연료·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

예시) 기타소득금액(50,000원) = 125,000(기타소득 지급액) - 75,000(필요경비 60%)

☞ 원천징수세액 : 0원 (과세최저한에 해당함)

- 분리과세 적용 : 기타소득금액(지급액 -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 가능
- 필요경비율 적용 : '18.1.~3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80%, '18.4.~12월 지급분은 70%, '19.1월부터는 6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함에 유의

남 대 문 세 무 서 장 (관인생략)

안내문 관련 문의는 상단의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